심의번호 : 2014.05.16 준법감시인-0577 심의필(유효기간 : 2015.12.31)

「퇴직연금 정기예금」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퇴직연금 정기예금」

■ 상품특징: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

2 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이며,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계약서류 또는 증서에 표시됩니다.

구 분	내용				
 가입자격	▷ 퇴직연금 가입 수탁자				
가입금액	▷ 제한없음				
계약기간	▷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 : 3개월 이상 5년 미만에서 지정				
기본이자율 (세금납부 전, 2014.6.16. 기준)	▷ 기본이자율은 신규가입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이 적용됨				
	계약기간	DB 금리 최저 최고	DC/IRP 금리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2.42 2.69	2.69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2.43 2.70	2.70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2.46 2.73	2.73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2.52 2.80	2.80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2.57 2.86	2.86		
	24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2.68 2.98	2.98		
	_ 30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2.76 3.07	3.07		
	36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2.84 3.15	3.15		
	60개월	3.05 3.39	3.39		
	※ 신규(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시 적용이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자동 재예치시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일반중도해지 이자율	▷ 신규일 당시 고시한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신규일 당시 고시한 일반정기예금 약정이율 × 70% × (보유일수/계약일수)				

1. 퇴직,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천재사변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특별중도해지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사유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법정요건에 따른 특별 중도인출의 경우 8.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사업자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9. 수수료의 징수 10.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 신규일 (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때 약정금리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한다. 1.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계약기간 1년 이하 : 기간별 약정금리 - 계약기간 2년 : 1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 계약기간 3년 : 2년 미만 예치시 1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2년 이상 예치시 2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 계약기간 5년 : 2년 미만 예치시 1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2년 이상 3년 미만 예치시 2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 약정금리, 3년 이상 예치시 3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이자율 2.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 - 계약기간 2년 미만 : 기간별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이율. 단, 6개월 미만은 3개월,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은 6개월, 9개월 이상 1년 미만은 9개월, 1년 이상 2년 미만은 1년을 계약기간으로 본다. - 계약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2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 도해지이율 - 계약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 도해지이율 단, 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가산금 리 포함)을 적용한다. ▷ 만기일 당시 고시한 일반 정기예금 만기 후 이자율과 동일 만기 후 이율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 약정이율 × 1/2)

계약의 혀	해지	▷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분할 지 (일부 지			▷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계약기간 단위 만기재예치 ▷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 : 가입자기		있 > 민 히	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예금주의 신청이 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 : 가입자가 신규시 지정한 상품으로 재예치 고, 신규시 지정한 상품이 없을 경우 원 계약일수 만큼 동일상품으로 예치	
예금자 보호여부	DC / IRP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DB	비해당	확정급여(DB)형 제도의 경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유의 사항

-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세금우대, 생계형(비괴세) 저축으로 기입이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우리은행 고객마케팅센터(1588-5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 wooribank.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고객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영업점, 인터넷뱅킹, 고객마케팅센터를 통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